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2. 6.

기초원천연구정책관
원 천 기 술 과

1. 개정 이유

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이 일부개정(시행 2022.12.11., 법률 제18865호, 2022.6.10. 공포)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「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'경미한 사항'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(제2조제4항 신설)
- 나. '기본계획 수립', '기본계획 수립·시행'을 '수립·변경', '수립·시행·변경'으로 개정(제2조 제1항~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08. ~ 2022. 09.) 예정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“수립”을 “수립하거나 변경”으로 한다. 또한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 등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수립하거나 변경----- -----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 수립 및 변경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신설	④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